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 : 2024.0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 2024-01호)

2024. 01.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차 례

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제 3 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원산지)
제 5 조(응찰조건)
제 6 조(구매규격 및 포장)
제 7 조(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제 7 조의2(입찰참가자격)
제 8 조(입찰보증금)
제 9 조(입찰 참가 신청)
제10조(해외공급자확약서)
제11조(입찰가격 조건)
제12조(입찰 시행)
제13조(입찰가격 입력 및 철회)
제14조(낙찰자 결정)
제15조(계약보증금)
제16조(계약)
제17조(신용장 및 물품대금 지급)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제19조(선적)
제20조(지체상금)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제22조(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제23조(반송)
제24조(미신고 가산세)
제25조(구상)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8조(적용환율)
제29조(불가항력)
제30조(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제31조(해석)
제32조(기타)

부 칙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입 물품구매 입찰에 적용할 일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되는 조건들과 약어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 또는 “aT”로 표시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3. “국내대리인”은 해외공급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을 말한다.
4. “해외공급자”는 입찰물품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5. “계약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6. 이 입찰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역조건은 INCOTERMS 2020에 따른다.

제3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1. 품목
2. 구매번호
3. 수량
4. 도착기한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일시
7.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원산지) 원산지는 WTO의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협정, 협약 등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응찰조건) 응찰자당 최소 또는 최대 응찰한도물량, 가격제시조건 등을 규정한다.

제6조(구매규격 및 포장)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구매규격, 포장단량, 포장재 및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①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9조의 입찰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규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지 관할 지역본부는 등록을 말소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보다 더 가까운 지역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으로 더 가까운 지역본부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공급자

가. 사업자등록증(영문 및 본국어)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다.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있는 경우에 한함)

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국영무역 국내대리인 및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공급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해외공급자 사업자등록증(Apostille 확인 또는 한국영사관 확인)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발급/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라.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마.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신청서(필요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바.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1부

* 해외공급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사.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2부

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 확인 증빙(통신납부 영수증 등)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모두 제출)(별지 제15호 서식)

카. 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 1부(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없는 경우)

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파.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현장확인)

③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표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 하나라도 중복 사용하는 업체(동일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거부한다. 또한 기존 등록업체 중 동일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등록하여야 하며 갱신 등록은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등록한 자는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입찰참가 불가 등)은 해당 업체에 있다.

제7조의2(입찰참가자격) ① 공사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공급자
2. 해외공급자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해외공급자를 대리하여 입찰 및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대리인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이 유의서 제2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 명의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입찰의 특성상 보증금 비율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유의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대리인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외공급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미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 소정양식(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미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표시된 신용장방식 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또는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 예치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낙찰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 중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귀속한다.

1. 입찰시간 종료 후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2. 소정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정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계약체결 통보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13조제1항과 같이 입찰시간 종료 전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를 철회할 경우에 한해 입찰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⑦ 낙찰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납부 후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

지 아니하며, 낙찰자를 제외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입찰참가자의 서면 반환요청(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중 미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는 낙찰자의 요청(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시 대체 처리한 계약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귀속한다.

제9조(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간 내에 직접 제출, 우편 또는 공사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이하 "aTBid"라 한다)에 지문인식을 통한 입찰참가 서류 등록·신청 내역 입력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aTBid상 신청내역을 입력한 경우, 아래 1, 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사본 1부
3. 해외공급자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증명서 1부(지문인식을 통한 입찰참가 신청 시 현금입금증, 이행보증보험증권, Stand-by L/C 및 은행지급보증서 사본 우선 등록 후 신청기한 내 입찰 주관부서에 원본 서류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동일 구매번호에 대한 입찰등록은 하나의 원산지로 하나의 입찰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하나의 해외공급자가 2개 이상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동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동일한 입찰에 복수의 국내대리인이 동일한 해외공급자를 대리하여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 해외공급자가 송부한 은행전문 또는 서면 대리인 지정 확인서에서 지목한 단일 국내대리인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공급자의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급자 및 복수의 국내대리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입찰참가 신청서류에는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전자로 입력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해외공급자 확약서, Supplier's Certificate)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해외공급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외공급자 확약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 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국제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공급자 확약서에는 구매번호, 품명, 원산지, 공급물량, 해외공급자(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국내대리인(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을 명확히 기재하고, 낙찰되었을 경우 구매규격 이상의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겠으며, 공사의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다는 내용과 국내의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구매입찰조건에 의한 입찰 및 계약체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해외공급자 직접 참여의 경우 국내대리인 내용 생략)

제11조(입찰가격 조건) ①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해상운임포함 가격 조건(CFR)으로 구매할 경우의 하화조건은 Berth Term 조건으로 한다. 다만, Container 운송의 경우 하화조건은 CY to CY 조건으로 한다.

제12조(입찰 시행) ①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실시되며, aTBid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③ 입찰시행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담합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한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별로 전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 IP로 전자입찰에 응찰 시 최초 1개의 입찰만 가능하고 인터넷 공유기와 무선 LAN, 일부 유통 IP 등으로 구성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일 입찰건으로 상이한 입찰자가 응찰할 경우, 응찰이 차단된다.

제13조(입찰가격 입력 및 철회) 입찰가격은 지정 시간 내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시간 종료 전에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주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참가자가 입찰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aTBid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자가 응찰 취소할 수 있다. 자가 응찰 취소를 한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제출된 입찰서는 제반 조건을 검토 후 공사 제시조건에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서 중 가장 낮은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희망 수량에 의한 경쟁입찰 시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수량이 구매수량 미만일 경우 잔량에 대하여는 차순위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낙찰자 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이 공사의 가격 안정사업의 목적 수행상 또는 기타 공사 방침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처리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유찰시킬 수 있다.
③ 최저가격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희망 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낙찰자의 결정은 입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최종 낙찰량이 최저응찰한도물량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 귀속을 면제받고 대상 물량의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① 해외공급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소정기한 내에 해당 입찰 건의 특별유의서에 명기된 계약보증금을 미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 소정 양식에 의거 미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표시된 신용장 방식(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 방식 및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또는 유효기간)은 도착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귀속한다.

1. 계약물량의 공급을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한 경우[계약물량 대비 선적서류(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상 선적물량(Net weight)이 부족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함. 다만, 계약물량 대비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벌크 물량은 허용오차 이내까지 계약이행으로 인정]
2. 제18조제3항에 의한 선적 전 물품 확인 시 물품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적합판정 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로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선적하여 인수 거부되는 경우
3. 제21조에 의한 도착지 품위검사 결과 품위규격 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에 의한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 결과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5. 지연도착으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6.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검사 및 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공사의 도착물품 인수거부・반송지시 혹은 국정검사 폐기 처분 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

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면제하며, 해당물량의 B/L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구매 특별유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반송기한 및 조건이 있을 경우 일반입찰유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해당 조건 충족 시 계약보증금 귀속을 면제한다. 또한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물품대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 비용을 반송 또는 폐기 완료 물량 비율만큼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행 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⑤ 계약보증금은 이행 완료 후 계약자의 서면 반환요청(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제16조(계약) ① 계약자는 제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소정기한 내 납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국어로 작성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입찰유의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은 계약사항으로 간주하여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내용이 이행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날인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aTBid에 등록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 또한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17조(신용장 및 물품대금 지급) ①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에 대하여 해외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양도불가능신용장)을 개설하며, 신용장 유효기한은 도착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주체는 수익자인 해외공급자로 한다.

② 결제 통화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되,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또는 NH농협은행이 입찰 당일 발표한 최초고시 대미달러 환산율을 적용한다.

③ 물품대금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 검사 적합 판정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 결과 및 기타 공사가 정한 품위규격에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적합 판정 후에는 지급동의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에 전송한 지급동의서
2. 지체상금 등 사전에 구상사유가 발생된 경우 구상액을 공제한 지급동의서

④ 신용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식물검역증명서 부본(중앙정부기관 발행)
5. 잔류농약검사증명서(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6. 원산지증명서(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7. 대금지급동의서(필요 시 공사발행)
8. 기타 필요한 서류

⑤ 잔류농약검사증명서에는 한국정부의 품목별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위생법」에 따름)에 따라 각 농약별 검사성적을 명시하되, 허용기준 이외의 농약은 정부기관의 식품검사 결과에 따른다.

⑥ 제4항제4호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은 항공우편으로 공사 통관지역본부로 지급 우송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을 통해 원료확보 및 선별포장 작업 시부터 사전 현지 지도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로 정선.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출장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선적 전 물품확인 일정을 공사와 협의 후 소정양식에 의거 "선적 전 물품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확인 요청 지연 또는 연기에 따른 귀책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이 물품확인 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품위계측조사표"에 적합 서명 날인이 없는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 또는 선적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의 확인 없는 적입은 금지하고 임의선적 시는 국내도착 즉시 반송 조치한다.

④ 규격미달 또는 포장불량 등인 경우 재선별 또는 재포장 작업하여야 하며, 재선별 후에도 품위미달 또는 포장상태 불량인 경우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금지한다.

⑤ 공사 직원의 출장인원 및 기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출장비용은 공사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출장 기간이 연장 또는 재검품 출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며 해당 출장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선적 전 물품확인 및 지도 결과는 도착항에서의 제 검사결과(농관원의 농산물검사 및 공사지정 공인검정사의 검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⑦ 해외공급자는 공사 출장자의 물품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출장자의 확

인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는 물품확인 완료 시까지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적) ① 해외공급자는 지정된 포장재와 포장방법에 의하여 포장선적하여야 하며, 선적 전 중량검정을 명확히 실시하여 선적량을 확인한 후 B/L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분할선적은 공사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환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벌크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해상보험 부보를 위하여 해외공급자는 선복 예약 후 계약번호, 선박명, 수량, 출항 및 도착예정일자, 송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에 즉시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선령 초과 등으로 인하여 추가 해상보험료 및 추가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도착항 Free Time(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은 품목별 지정 일수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도착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와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 내 경과보관료, 소독비 등)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의 훈증소독명령으로 훈증소독되는 경우 해외공급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비용 및 소요기간만큼 Free Time을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⑦ 도착항 Free Time 및 선적횟수 초과 등에 따른 항만하역비(화물체선료, 화물지체료, 경과보관료, 터미널처리비용 등)의 정산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지체상금) ① 지정된 도착기일(이하 선적기준일 경우 “도착”은 “선적”으로도 해석한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도착지연 물량(B/L물량 기준)에 대하여 지연일수(도착일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1일당 상업송장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 도착 후 반송되는 물량의 경우 반송물량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③ 지정된 도착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지연도착 또는 해상운송 일수 등을 감안 시 도착기한 10일 초과가 명백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지연도착이 제29조에 의거 불가항력의 객관성이 인정될 때에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① 국내항 도착 이후의 품위는 농관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농관원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의 행정사항 비고에 기재된 구매규격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 구상 또는 반송 처리한다. 다만, 농관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품위는 공사가 지정한 검정회사의 검정결과에 따른다.

② 농관원이 실시한 품위검사 결과와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검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입찰 시 제시한 구매규격 이외에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하자 발견 시 공사와 계약자는 공인검정기관에 의뢰하여 합동검정을 실시하며,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반송 또는 국내 시장가치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다만, 계약자가 합동검정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단독 입고 검정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③ 손상 및 중량은 공사 지정검정사의 검정 결과에 따르며, 검정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선상통관하는 경우는 본선하역 시)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규명 등은 비축창고 최종검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사용 목적상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을 규명한다.
2. 손상검정은 검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구검정(본선,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장치장) 및 최종 창고검정 등을 통하여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
3. 중량검정 및 손상검정은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도 검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도착항 및 비축기지 입고 검사·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수규격을 초과하여 불합격한 때에는 공사가 인수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①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② 식물검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훈증소독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소독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반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하에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은 불가하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결과 폐기, 반송 처분받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판정, 공사 검역조건 불합격 판정 또는 방사선조사 검사 결과 방사선 조사된 물품으로 판명될 경우
3. 농관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 결과 인수규격에 미달되어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4. 안전성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인 흙, 볍씨, 왕겨, 볏짚,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

병해충, 소독 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③ 반송 시 원활한 반송 진행 상황 파악 및 관련 법령 위반 차단 등을 위하여 통관 지역본부 계약 관세법인을 통하여 반송 추진해야 하며, 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계약 관세법인과 약정된 B/L 건당 요율을 적용한다.

제24조(미신고 가산세) 계약자 귀책사항으로서 인수규격 초과, 국정검사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오류 및 상대국 식물검역증 원본 오류 등의 사유로 CY반입일로부터 30일 내 수입 및 반송 신고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구상) ① 품위규격 미달품을 수급 등 여건상 인수하여야 할 경우 및 구매규격은 초과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구상금은 해당 물량의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상의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다만, 수분초과 및 이물초과에 따른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감가계산방식(별표 1)에 의해 산출하되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이 초과 공급된 경우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구상처리하며 계약물량 대비 초과공급된 물량은 관세 등 구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착지 중량검정보고서상의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품목은 물품대를 지급하며, 분할 공급 시 초과 공급된 물량은 B/L건별 표시중량의 1% 이하까지만 동일 계약 건의 전체 공급물량에 반영하여 해외공급자에게 구상 청구한다.
③ 선적물량(B/L물량)과 대비하여 발생한 중량부족분과 손상품 중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사고로 판정된 물량에 대한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손상품의 비용손해를 합하여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④ 제3항의 비용손해는 해외공급자 귀책사고가 명백한 중량부족분의 관세와 위격품,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 폐기비용 등 제비용을 말하고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과정 등에서 감량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비용손해에 추가한다. 다만, 포장품에 한해 선적서류별 표시중량(Net weight)보다 1% 이하의 중량부족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를 해외공급자 구상에서 제외(비용손해에서 제외)한다.
⑤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조사결과 구매규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지정 국제공인검정사와 공사 지정검정사의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구상처리한다.
⑥ 계약이행 여부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물량) 단위로 실시한다.

⑦ B/L별로 정산 시 원화인 경우는 십원 단위, 미 달러화 또는 유로화인 경우에는 센트 단위, 위안화는 소수점 둘째자리 단위까지 계산하며 그 미만은 절사한다.
⑧ 가치하락률, 감가율 등 조정률 또는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여섯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
⑨ 해외공급자가 구상금 외화 송금 시 또는 공사에서 Stand-by L/C를 통한 구상청구 시 발생하는 송금·취급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는 공사부담으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공사는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도착된 물품이 공사 인수규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수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제재통보일로부터 소정기간까지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이 유의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2.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다.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3.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다.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인수거부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사.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4.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나.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다.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② 입찰일 기준 공사.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자는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은 제재통보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중하여 제한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부정당업자가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한 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⑦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⑧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은 해당 해외공급자로 한다. 다만, 국내대리인에게 명백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⑨ 제1항의 사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한다.

제28조(적용환율)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 또는 NH농협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응찰 한도를 산출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납부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 또는 NH농협은행 최초고시 매매기

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보증금 귀속 또는 구상금 등이 발생하여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신용장으로 지급청구하지 아니하고 낙찰업체 또는 계약업체가 현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 또는 NH농협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신용장으로 원화금액을 공사가 지급청구하는 경우 지급청구일 기준 NH농협은행 1회차 '송금받을 때'(Wire Transfer Receiving)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가 원화금액을 외환으로 입금할 경우 입금일 기준 NH농협은행 1회차 '송금받을 때'(Wire Transfer Receiving)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⑥ 항만대납비용 등 원화로 발생한 구상금을 물품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 원화 구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결정당일의 NH농협은행 1회차 '송금받을 때' (Wire Transfer Receiving)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⑦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되,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납부한 경우에는 서울외국환중개(주) 또는 NH농협은행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계약보증금 납부 당일 발표한 최초고시 대미달러 환산율을 적용한다.

제29조(불가항력) ① 해외공급자의 계약불이행이 예측 불허한 사항이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책된다.

1. 천재지변, 2. 공적, 3. 정부의 조치, 4. 화재, 5. 홍수, 6. 전염병, 7. 검역상 금지조치, 8. 파업, 9. 입출항 금지, 10. 선상반란, 11. 악천후, 12. 전쟁, 13.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외공급자는 상기 사유발생 10일 이내 혹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점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불이행 여부 결정과 그 범위를 정하며 해외공급자는 이 조 제1항에 명기된 바에 의하여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

제30조(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하여 입찰등록 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을 거절한다.

②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등록 시 공급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준수함을 동의하여야 하며, 물품 공급 과정 중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착취 사실 확인 시 인수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해석) 입찰 및 계약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기타) ①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무역 관례에 따른다.
② 동일 사항에 대해 입찰설명회에서 제시 설명한 구매조건이 이 유의서와 상이한 사항은 입찰설명회 시 제시한 조건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③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이행 및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고한 입찰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1. 감가계산방식
2. 항만하역비 정산기준

【별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3.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신청서
4.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
5. 입찰참가자격 등록증(물품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6. 해외공급자 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
7. 입찰보증금(B-bond) 양식
8. 계약보증금(P-bond) 양식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1. 계좌입금의뢰서
12.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신청서
13. 퇴직자 영입확인서 (삭 제) (‘20.11.09)
14. 전자입찰취소신청서 (삭 제) (‘17.04.01)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표 1】 감가계산방식

□ **수분초과**

계근인수량 × [1-{(100-MT)/(100-MS)}]×[{(MT-MS)/MS}+1]
× 110%× CIF
(MS = 수분규격치, MT = 수분검정치)

□ **이물초과**

계근인수량 × [1-{(100-FMT)/(100-FMS)}]×[{(FMT-FMS)/FMS}+1]
× 110%× CIF
(FMS = 이물규격치, FMT = 이물검정치)

※ 계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여섯째자리 부터는 절사한다.

【별표 2】 도착지 항만비 및 검정료 정산 기준

1. 선적 및 국정검사 신청서류 지연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선적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B/L, INVOICE, PACKING LIST, 식검증사본, 한글표시사항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원본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대두·콩나물콩(NON-GMO증명서-중국, IP구분관리증명서-중국제외 국가), 멥쌀(잔류농약검사증명서), 공통서류(식물검역증) * 식물검역증(원본) 검역본부에 미제출시 식물검역결과 보류되며, NON-GMO·IP구분관리증명서·잔류농약증명서 원본 미첨부시 식품검사 신청 불가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식물검역증(원본) 오류 보완 등으로 인하여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잔류농약증명서(원본) 도착 지연으로 인한 도착지(최초)정밀검사 판정 시 해당 비용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CY 반입 지연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CY 반입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선적 및 원본서류 등 지연 도착 위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지체 일자가 긴 기간을 적용

2. 국정검사 위반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식물방역법」에 의한 유해 병해충 검출 위반 및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농림축산검역본부)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식물검역위반 통보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선적서류 도착 지연으로 식물검역신청(입항 후 10일 이내) 지연 시 해당 과태료 계약자 부담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위반 및 선별조치 등(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한글표시사항위반 통보일로부터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목 선별 등으로 인한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통보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위 규격검사 위격에 따른 재검사 신청(농관원)	○ 계약 Free-time 초과 시 농관원 당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농관원 재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3. 항반비용(DEM, DET, OST) 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계약 Free-time 미확보	○ 미확보 일수 Free-time 연장 조치
○ DEM+DET 포함 Free-time 확보	○ DEM+DET포함 Free-time일 경우 DET는 Free-time에서 제외(예)
○ 계약 DEM 확보, CY경과보관료는 미확보	○ 경과 보관료 계약 Free-time과 동일 날짜 적용

(예) 입찰유의서상 Free-time 25일이나 해외공급자가 Free-time 25일(DEM+DET 통합) 적용하여 선적한 경우 DEM 25일만 적용(DET는 선박회사가 CY반출일로부터 5~7일 Free로 부여함)
- DEM 25일 : 입항일로부터 25일 되는 시점까지 CY에서 컨테이너 반출시 비용 면제
[다만, 컨테이너 반출 후 선박회사에서 부여하는 Free기간(5~7일) 내 공컨테이너 반납 시 DET 비용 면제]
- DEM+DET 25일 : 입항일로부터 25일 되는 시점까지 입고작업을 완료하고 공컨테이너 반납

4. 계약 선적횟수 및 도착기한 초과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계약 선적횟수 초과	○ 선적횟수 초과 B/L건당 통관대행료, 국정검사비용,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검정료 등 계약자 부담
○ 공사에서 정한 도착기한 10일 초과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본사 물품 인수 승인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본사 승인 시까지 국정검사 중단

5. Original B/L 지연 도착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통관 후 Original B/L 지연 도착 * Original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D/O발급이 되며 운송을 위한 CY 반출 가능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통관일부터 Original B/L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Original B/L은 본사 거래은행 도착일 기준

6. 경인지역 공컨테이너 미반납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경인지역 비축기지 운송 후 공컨테이너(일반컨테이너)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반납불가 (여석부족, DOC면제 비용 미납 등)	○ 인천, 부산 등 의왕ICD 이외 지역 운송으로 소요되는 운송비 계약자 부담

7. House B/L 제출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발급 후 공사 제출 시 추가 소요비용 발생	○ D/O 발급 시 House B/L 사용으로 Handling Charge 등 공사에 불필요한 항만비용 발생 시 상기 비용 계약자 부담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번호	AT　　-　　-	입찰일자	년　월　일
품명 및 수량		결제희망통화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또한,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의 구매번호 입찰에 있어서 입찰유의서 및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2. 해외공급자 확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증명서　1부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핸 드 폰 번 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본인은 공사의 국영무역 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해외공급자(국영무역 입찰참가자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영문 및 본국어) 사본 각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있는 경우에 한함)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국영무역 국내대리인 및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③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④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 사본(원본지참) 1부 (국영무역구매입찰 등록 시)
⑤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위임장 1부 (필요 시)
⑥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 1부
⑦ 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첨양식) 2부 (공사 및 업체보관용)
⑧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 확인 증빙 1부 (통신비 납부 영수증 등)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대표자, 대리인 모두 제출)
⑩ 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 1부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없는 경우)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⑫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현장확인)

20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핸드폰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신청서

[사용인감계]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영무역 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 인 감	사용인감 1	사용인감 2	사용인감 3

[대리인 신청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영무역 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본인을 대리하여 아래의 대리인이 수행토록 하고 대리인이 행사하는 모든 사항을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신고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직위)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직위)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및 아래 증명서 중 택 1
- 4대 보험 가입증명 자료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택 1)
- 급여 관련, 해당 업체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자 상호(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본인감으로 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 및 수입권공매 일반경쟁입찰(이하"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자격) 동일 대표자, 동일 대리인, 동일 주소지, 동일 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동일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개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등록업체 중 동일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규 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지 관할 지역본부는 등록을 말소한다. 단, 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보다 더 가까운 지역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더 가까운 지역본부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입찰참자가격 등록의 유효기한은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는 유효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을 소멸한다.

제4조(등록확정) ① 공사는 등록신청 후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적부를 확정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 등록 후 신청서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입찰참가 불가 등)은 업체에게 있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 입찰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공사의 입찰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재 해당기간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6조(기타사항) 등록신청 공고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공사의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인(당사)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약하며 인지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국영무역 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table>
<tr><td colspan="2">등록번호</td><td colspan="4">(공사기재사항)</td></tr>
<tr><td rowspan="5">등
록
자</td><td>상 호</td><td></td><td>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전 화</td><td></td><td>팩 스</td><td colspan="2"></td></tr>
<tr><td>휴대폰</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인
감</td><td>본인감</td><td>사용인감 1</td><td>사용인감 2</td><td colspan="2">사용인감 3</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입 찰
참 가
대리인</td><td>성 명</td><td>직 책</td><td colspan="3">주민등록번호</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해
외
공
급
자
(국영무역
구매입찰
한함)</td><td colspan="2">업 체 명</td><td>국 가</td><td>계약기간</td><td>확인</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able>

상기인은 국영무역 구매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자격자로 공사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유효기한 : 20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 주의사항

1. 이 증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영무역 구매 일반경쟁입찰 및 WTO·FTA수입권공매에서 통용됩니다.
2. 기재사항 중 추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별지 제6호 서식】

Supplier's Certificate

To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ate :
Attn :

1. Invitation No. **AT** - -
2. The Origin & Commodity : i.e.) Indian Sesame Seed
3. Port of Loading : _____
4. Quantity : _____ M/T
5. Supplier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6. Agent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We, as an overseas supplier, certify that we fully understand all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and are pleased to submit the supplier's certificat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above tender.

We hereby appoint the above company as our agent in Korea, and entrust the agent with all rights to attend the above tender and to make a contract with **aT**, if award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on our behalf.

In addition, we certify that we will supply better quality than the purchasing specifications of the above tender.

Supplier's Name

President's Signature

【별지 제7호 서식】

The Form of B-bond

We, _____,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No. _____ in favor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aju-si, Jeollanam-do, Korea.**

For account of _____, for the sum of USD_____(say U.S. dollar_____) as a security covering bid bo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number **AT - - .**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the sight draft(s)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tatement stating that accountee has failed to fulfill its any obligation under the bid number **AT - - .**

This stand-by L/C is valid in Korea for a period of 31 days after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enders from the issuing date of this stand-by L/C. It shall be released upon beneficiary's instructions after contracting under depositing performance bond, or on its expiry date which may occur first and T/T reimbursement is allowed.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 개설은행은 대외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 (개설 이전 공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신용도 확인)

※ B-bond 개설시 국내 Advising Bank(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Advising Bank) Nonghyup Bank aT Head Office Branch
(Address) 227, Munhwa-ro, Naju-si, Jeollanam-do, 58326, Republic of Korea
(Tel) 061-337-7101~2, (Fax) 061-337-7105, (Cable) KONACOF,
(Telex) K27421, K27235, (Swift) NACFKRSE

【별지 제8호 서식】

The Form of P-bond

We, _____,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No. _____ in favor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aju-si, Jeollanam-do, Korea.**

For account of _____, for the sum of USD_____(say U.S. dollar_____) as a security covering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number **AT - -** , the contract concerned and L/C issued on the basis of this stand-by L/C.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the sight draft(s)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tatement stating that accountee has failed to fulfill its any obligation under the bid number **AT - -** , the contract concerned and L/C issued on the basis of this stand-by L/C.

This stand-by L/C is valid in Korea for a period of 90 days after the due date(yyyy, mm, dd) of arrival from the issuing date of this stand-by L/C. It shall be released upon beneficiary's instruction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 may occur first and T/T reimbursement is allowed.

This stand-by L/C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 개설은행은 대외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 (개설 이전 공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신용도 확인)

※ P-bond 개설시 국내 Advising Bank(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Advising Bank) Nonghyup Bank aT Head Office Branch
(Address) 227, Munhwa-ro, Naju-si, Jeollanam-do, 58326, Republic of Korea
(Tel) 061-337-7101~2, (Fax) 061-337-7105, (Cable) KONACOF,
(Telex) K27421, K27235, (Swift) NACFKRSE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公社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관계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관계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2〕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公社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公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公社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公社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상기 사항에 대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감사·조사·감찰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계좌입금 의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1. 의뢰자(국내대리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2. 의뢰내용

가. 수령금내역

◦ 관련입찰(계약)번호 및 용도 :

◦ 당초입금액 :

◦ 수령대상금액 :

- 기 타 : 문서번호 로 청구된 관련 구상금(USD) 공제 후 입금 요망

나. 수령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외화송금 시	수취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BANK CODE	해외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해외은행 A/C NO.

다. 계좌입금의 부대조건

◦ 은행 송금수수료의 부담 : 지급액에서 은행 송금수수료를 공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뢰자가 부담

◦ 의뢰내용의 하자에 대한 책임 : 의뢰자에게 귀속됨

◦ 상기 예금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
예금주명의 상이 및 입금한도의 초과 등 지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예금계좌의 서면에 의한 의뢰가 있을 때까지 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송금지연에 대한 이자의 청구권은 없음

3. 의뢰서의 유효기간 : 의뢰금액 수령 시까지

4.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원화 수령 시)

귀 공사가 우리 회사에 지급하는 일체의 자금 수령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신청서

<table>
<tr><td>입찰번호</td><td>AT　－　－</td><td>입찰일자</td><td>20　.　.　.</td></tr>
<tr><td>입찰보증금
납부 내역</td><td colspan="3">USD or 원　　(납부일자 : 20　.　.　.)</td></tr>
<tr><td rowspan="2">계약보증금
납부 내역</td><td>대체금액 :</td><td colspan="2" rowspan="2">계 :</td></tr>
<tr><td>추가납부액 :</td></tr>
</table>

상기 입찰 건에 대해 낙찰됨에 따라 기입금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자 합니다.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20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퇴직자영입확인서 (삭 제) ('20.11.09)

【별지 제14호 서식】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삭 제) ('17.04.01)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영무역(수매)품목의 구매 및 판매,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비축 농산물 입찰 참가 자격 부여 및 입찰정보 관리
-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선택항목	팩스번호,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직위)), 신분증 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대금지급 처리 과정에서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판매 입찰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 참가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에 의거, 고유식별정보를 공사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판매 입찰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부여 및 입찰의 전자적 처리		
이용항목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용기간	**준영구**

- 고유식별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전문기관**
- 제공목적 :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관리, 공공기관 정책자료**
- 제공항목 : 신청인(상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판매 및 출고내역
- 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판매 입찰 및 WTO·FTA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